대 관 안 내 문

문화역서울284(구 서울역사) 대관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- 1. 문화역서울284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(사적 284호)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바, 건축물의 훼손, 파손, 화재 등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. (*별첨 참조)
- 2. 당역사 건축물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, 음주는 절대 금지합니다.
- 3. 당역사 건축물은 문화재로서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에 의거 <u>특정소방시설물</u>로 지정되어 법적 제재가 있으며 특히 엄중히 처벌됩니다. (*별첨 참조)
- 4. 공간 행사 준비 시공 및 철수 작업시 건출물의 파손, 훼손 및 손상 등 방지를 위하여 **필히 출입문, 바닥, 벽면, 계단(난간 포함) 등 보양**을 한 후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*원상복구 원칙)
- 5. 당역사 작업차량의 출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코레일측과 광장 사용 협의에 꼭 필요하오니, 출입 3일전까지 차량 내역(작업신고서)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일반 승용 차량은 출입이 절대 불가하오니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문화역서울284 시설관리실 (당직실 02-3407-3540)

*별 첨

※ 문화재보호법

- 1.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(제 92조)
- * 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소방시설법)
- 1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·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
- ※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또한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소방시설법 제9조, 제48조)
- 2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, 내부 마감재료등 (이하 "방화시설"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- 2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<u>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</u> 하는 행위
- 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4.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- ※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소방시설법 제10조, 제48조의2)
- 3.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**300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 (소방시설법 제12조, 제50조)
- 4.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"방염대상물품")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(소방시설법 제12조, 제53조)

5. 위 법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 및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(소방시설법 제53조)

감사합니다.